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32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674,310원, 등록세 34,728,910원, 지방교육세 6,529,840원, 농어촌특별세 1,215,48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가. 원고는 1993. 1. 8. 설립되어 지관제조 및 판매업,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B은 2002. 12. 30. 사업장 소재지를 '[redacted]시 C, D'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설립될 무렵 B의 소유이던 [redacted]시 C 잡종지 99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D 잡종지 99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제2토지 지상의 단층 공장(제조장) 197.4㎡(이하 '제2공장이라 하고 제1, 2토지와 제2공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제1토지 지상에 단층 공장(제조장) 197.4㎡(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제1, 2공장에서 지관 제조업과 지관기계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다. 원고는 2009. 6.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로 약정하였고, B은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20. 원고가 소멸된 중소기업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가 사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간 통합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519,510원, 등록세 22,519,510원, 지방교육세 4,227,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후 폐업된 B의 사업장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동일하게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redacted]도지사에게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5. 7. [redacted]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원고는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기각결정은 2015. 8.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 시 취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위 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4. 10. 2. 원고에게 취득세 12,154,800원, 등록세 12,209,400원, 지방교육세 2,301,880원과 농어촌특별세 1,215,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증액경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흡수하여 부과된 취득세 34,674,310원, 등록세 34,728,910원, 지방교육세 6,529,8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2014. 12. 1. 증액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경정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처분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종전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 위법사유인 중소기업 간 통합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사유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경정처분도 위법해진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종전 처분만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심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원고의 행위 속에는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5. 8. 19.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3.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2공장에서 지관 및 지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라인을 지관 제조 부분(제1공장)과 지관기계 제조 부분(제2공장)으로 분리한 후 각각 소사장제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으면서 그가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다음, 지관 제조를 위한 제1공장은 소사장인 E에게, 지관기계 제조를 위한 제2공장은 소사장인 F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후 임대할 때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된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공장기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1, 2공장에 설치되었던 공장 설비를 이전하는 업무, 직원들을 소사장들에게 인계하는 업무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한 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 2항,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제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7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B이 그가 운영하던 임대사업의 주된 자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직접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는 F, E를 통하여 사실상 지관 및 지관기계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임대업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이 영위하던 임대사업이 원고에게 동일성이 유지되며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원고의 대표자인 B이 원고에게 당초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B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00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제1공장에서 지관 및 지관기계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약정이 체결된 2009. 6. 30.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 2. 1. F에게 제2공장과 그 부지인 제2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고, 2010. 2. 18. E에게 제1공장과 그 부지인 제1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 전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원고가 F, E와 약정한 임차보증금은 B과 약정한 임차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특히 E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월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1공장과 제1토지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제조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을 당시 제1, 2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 중 일부를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제1공장에 지관 제조설비, 제2공장에 지관기계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고, F과 E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지관기계와 지관을 각각 제조하도록 하였다. 한편 E는 2010. 2. 18. 원고와 소사장 분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협약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면서도 판매조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F, E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지관 또는 지관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라) F은 제2공장과 그 부지를 임차한 2010. 2. 1.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0년 7월경, E는 제1공장과 그 부지를 임차한 2010. 2. 18.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1년경 각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지관기계 제조업과 지관 제조업을 중단하였음에도 원고의 2011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2010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다.

마) 원고는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E에게 원지나 지관지 등의 원자재를 제공하였고 그 원자재 대금과 E로부터 납품받은 지관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관 대금을 정산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납품받은 지관을 원고의 종전 거래처에 그대로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에 원료 조달의 주체, 지관 대금의 현실적 지급 여부, 종전 거래처의 유지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제1공장에서 운영한 지관 제조업은 사실상 원고의 지배하에 영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자 명의만을 E 앞으로 등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민경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